

犯罪 영역분할 방식의 搜查權 調整案은 비현실적 彌縫策

— 警・檢 相互 협력관계는 전세계적 추세 —

경찰에게 민생범죄에 국한하여 부분적인 수사의 주체성을 인정함으로써 범죄의 영역을 분할하는 방향으로 警・檢간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과 乖離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警・檢관계를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로 명시하지 않는 형소법의 개정은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이 주장하는 수사구조 개혁은 헌법 제 12조 3항에 인신구속 뿐만 아니라 체포, 압수 또는 수색까지도 검사가 영장신청을 독점하게 하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

권」이 명시된 상황에서 공소권, 형집행권을 가진 막강한 검찰이 1차 수사 기관화할 경우 발생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경찰과 검찰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되도록 하자는 것인데, 단순히 범죄의 영역을 분할하는 방식의 극히 일부분의 형식적 수사권 조정은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즉, 量的인 분할방식인 죄종별 수사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죄종 분할의 기준을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곤란한 현실 속에서 기준설정이 모호할 수 밖에 없으므로 두

기관간에 갈등의 소지만 남겨두게 될 것이며, 각종 특별법 제·개정 등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개정 혹은 신설할 때 마다 검찰의 지휘 대상인지 경찰의 독자적 수사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심히 번거롭게 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점은 통상적으로 범죄는 결합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검찰의 지휘대상과 경찰의 독자적 수사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할 것인데, 이 경우에 어느 기관이 수사할 것이며, 어느 범위까지 검사가 지휘할 수 있을 것

일련의 세부적인 절차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한 기관이 전체 수사절차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절차(개시권)는 경찰이, 다른 나머지의 절차(종결권, 공소권)는 검찰이 분담하는 분권적 방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보화 경희대 법대 교수도 최근 국회에서 이인기 의원이 주축한 형소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자리에서 『소위 민생범죄에 한해 부분적으로 자율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생범죄의 한계를 법적으로 정의 내리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는 점, 이 정도로는 警・檢간의 관계를 견제와 균형의 수평적 대등적 관계로 바로 잡기 어렵다는 점, 기타 중대범죄에 있어서도 상호 감시와 경쟁을 통해 사법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 되도록 하고 법 앞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을 거부할 이유와 명분이 전혀 없다는 점 등에서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크게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경찰청은 50여년 전 제정된 일제 군국주의 시대적 「검사의 수사권 독점」 및 경찰과 검찰간의 「상명하복 관계」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맞게 재조정 되어야 하고, 개별적 수사절차 또한 이에 맞게 개선되어야 함으로 현행 수사구조를 결정짓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 195조와 제 196조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에도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인기 의원과 홍미영 의원도 97%의 수사를 책임지고 수행하면서도 권한이 없었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주체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간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에 수사사의 투명성과 인권보호의 강화, 대국민 수사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典興인 열린 우리당의 檢・警 수사권 조정 정책 기획단은 이러한 내용을 주로 하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지난 7월 1일, 8월 23일에 이어 9월 12일에도 3차 회의를 가졌는데, 경찰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주로 민생범죄에 대해서 자율적인 수사개시와 진행권을 인정하자는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檢・警 상호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의 개혁 마인드를 촉구하며

— 박 노 섭 (경찰대학 교수, 원헌대학 법학박사)

9월 정기국회가 개정되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 6월 이인기 국회의원과 홍미영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입법발의안의 통과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이 이번 수사권조정회에서 제시했던 안은 실무상 사법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수사권에 대한 법적인 명문화였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개정을 요구했는데, 이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수행함에 있어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와 진행에 대한 일반근거조항 없이 오직 형사소송법 제 196조의 검사지휘만을 근거로 하는 것은 중대한 입법 불비이기 때문이다.

현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한과 관련하여 검사의 수사임무(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사인력활용(형사소송법 제196조)과 수사실행권한(형사소송법 제199조에서 제245조) 및 수사종결권(형사소송법 제246조)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라는 용어는 이러한 권한을 합한데서 나오는 것이지 형소법 제195조에서 도출되는 개념이 아니다.

특히 경찰은 수사권조정위원회에서 경찰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으면 경찰수사가 불법부당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수사권한이 남용되어 인권을 침해하거나 공소유지조차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 참여정부가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신뢰는 다른 권력의 불필요한 통제와 간섭을 자제하고 영역별 권한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둠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분권은 자율을 요구하고 자율은 책임을 요구하며 분권, 자율과 책임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이 탄생된 지 50년이 지난 지금 형사소송의 개혁방향은 국민사법참여를 통하여 그동안 법관의 전유물로 여겼던 유·무죄의 판단을 시민판사와 공동으로 분담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방향은 수사절차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 이영란 교수는「검사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수사과정에 대하여 적정절차의 준수여부를 감시하여야 한다

는 주장을 하나 국민의 인권은 법적지식이 특정기관에 강력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 수사기관들이 스스로 법의 적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영란 교수의 지적은 권한집중을 통한 타기관과의 지휘·감독은 더 이상 자율과 책임을 요구하는 분권사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특히 간과되지 말아야 할 것은 '공정한 법률의 감시자'는 스스로 집행자의 지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검찰이 모델로 삼고자 하는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검찰은 '법률의 감시자'라는 지위에 충실하기 위해 자체 수사기관



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건국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경찰은 수사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옹호를 위한 피의자의 법적관리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이다. 수사절차상 인권침해방지와 권한남용의 방지는 단순히 검사의 준수법적인 지위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 등 외적인 감시체제가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진행 절차가 투명해짐으로써 비로소 확립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검관계는 상호견제를 통하여 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상호간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각 기관의 전문영역을 교류함으로써 수사활동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검관계에 대한 논의는 수사기관간의 상명하복관계에 따른 지휘·통제의 관점에서 벗어나 양 수사기관 모두 국민과 사법의 통제대상이라는 인식하에 진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조정위원회에서 경찰이 제안한 의제에 대한 검찰의 견해는 경찰 수사에 독자적 영역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웠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경찰이 염원하는 수사권조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기대해 본다.



경찰청은 최근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업무전반에 걸친 국정감사를 받았다.(허준영 경찰청장을 비롯 경찰청 간부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警友會, CCTV 유지보수 및 폐카트리지 수거사업 진출 수익금은 불우회원 복지기금으로 활용

조직활성화와 회원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회가 경찰관서의 보안강화 및 예산절감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CCTV 유지보수 사업과 폐 카트리지 수거사업을 시작했다.

CCTV 유지보수 사업은 현재 전국의 경찰지구대, 치안센터, 유치장 등에 설치된 CCTV에 특수장비를 장착하는 한편 인터넷 회선 접속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CCTV가 증거채증, 근무감독, 인권유린 방지 등 경찰 업무수행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관리체제상의 문제로 빈번한 고장과 성능 저하, 장

비수명 단축은 물론 인터넷 회선 이용에 따른 영상보안 누출의 위험성, 회선보수 유지비 과다 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경우회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경찰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CCTV는 20여개사의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치후 2년 6개월이 지나 상당수가 Power Fan 불량현상이 나타나고 영상화질의 흐림, 수리비 과다지출 등의 문제점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선된 CCTV 운영방식은 현재

경기 광주경찰서에서 지난 2003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전국 경찰기관의 업무혁신사례로 채택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폐카트리지 수거 사업 역시 경찰관서에서 나오는 각종 프린트기의 다 쓴 카트리지가 상당수 재사용 가능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기함과 아울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수거 판매로 얻어지는 이익금은 불우회원 후생 복지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5면 특집 / 형소법 개정 발의한 홍미영 의원 인터뷰

民主 改革時代인

21세기에도 檢・警은 上命下服 관계인가?

- 1962년 신설된 헌법 제12조 3항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경찰의 수사권 조정건에는 완전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화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상호협력적인 檢・警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1. 日帝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경찰은 이미 57년전(1948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의 檢・警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검찰은 존경을, 경찰은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도 성숙된 민주사회의 여건에 맞게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경쟁과 협력의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2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시분권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구상에 수사권 없는 경찰은 한국뿐이며 오늘날 전세계의 형사소송절차는 기소의 주체와 수사의 주체로 분리되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사권(개시·종결),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독점한 막강한 검찰이 1차 수사기관화 하고 있으므로 檢・警간 수사권의 분배로 견제와 경쟁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3. 더 이상 자질문제, 인권보호라는 구실로 경찰수사권 현실화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20년간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간부의 양성,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특채, 간부후보생 배출, 법학전공 수사요원 특채, 조사요원 간부화, 인권담당관 배치, 유급 자문변호사제 도입, 피해자 보호팀 운영 등의 자질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고 순경채용자의 75%가 대졸학력 이상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60년간 주장되어 온 경찰수사권의 시기상조론은 이제 그 명분을 잃었다.

4. 수사분권 요구는 기관 이기주의적 바깥릇 다름이 아닙니다

범죄사건(연간 160여만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법률상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연간 사건관련자 150여만명이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조사를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민의 불만해소와 사법서비스 편의증진을 위해 경찰의 독자수사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 2005년 6월 20일
조선·한겨레 신문에 성명서 발표

大韓民國在鄉警友會 120萬 會員 一同